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95
------------	------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의자 : 손금주 · 최경환 · 이용주

신용현 · 이동섭 · 장정숙

오세정 · 김광수 · 김관영

주승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 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HVDC(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 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로 각 구분하여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50만 볼트 HVDC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 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안 제2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를 “76만 5천 볼트 및 직류 50만 볼트 송전선로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를 “76만 5천 볼트 및 직류 50만 볼트 변전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제4호 전단 중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를 각각 “76만 5천 볼트 및 직류 50만 볼트 송전선로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나. -----
----- 76만 5천 볼트 및 직
류 50만 볼트 변전소의 -----

3. -----

----- 76만 5천 볼트 및 직
류 50만 볼트 송전선로의 -----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생략)

4. 76만 5천 볼트
및 직류 50만 볼트 송전선로
의

5. (현행과 같음)